

연구 자료

##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각국의 독자적인 시스템 전략 분석

박덕병\* 안윤수\*\* 유명님\* 김미희\*

Key words: 독자적 시스템(sui generis system),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on *sui generis*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member countr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Reports submitted to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ee annex 1. 2).

First, whereas developing countries have preferred to a *sui generis* system, existing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seems to be the preference of advanced countries which are USA and Japan. Second, the perceived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procedures t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re novelty or originality (49.2%), individual/collective creation (36.1%), informal nature of traditional knowledge (32.8%), inventive step or non-obviousness (31.1%), and term of protection (23.0%). Third, the important factors which are for the policy choices reflected in the *sui generis* measures and law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 knowledge are legal and policy framework, policy tool, policy objectives, and form of protection.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 1. 서론

오늘날 전통지식은 그것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 부문과 농업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통지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연구사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연구관

지적재산권은 인정마크, 상표권, 의장권과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통지식보호를 위해 유용하다. 그러나 현재 전통지식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법체제하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특허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체계 내에서 권리를 보호 받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 전통지식에 대해서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되거나 새로운 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간의 권리인정에 대해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전통지식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전통지식을 선행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통지식은 독특한 특성 때문에 선행기술에 포함시키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별한 권리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WIPO 국가간 위원회에서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의 보완 및 새로운 역할 정립 단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보호제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독자적 시스템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각국의 독자적인 시스템 전략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기존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WIPO 회원국과 문제인자들 간의 유사성

과 차이성을 분석하고, WIPO 회원국 간의 독자적인 시스템의 연관성과 각국의 전통지식 보호 전략을 도출하여 한국 전통지식 권리화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00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7월 7일 까지 WIPO에 제출되어 정리된 공식문건 97건의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 WIPO 국가간 위원회 1차 회의부터 5차 회의까지 제출된 각국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방법은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 방법으로 연관성 분석(connectivity)과 상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은 Ucinet 5.0과 Netminer 2.1이다.

## 3. 연구결과

### 3.1. 국제적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제도와 법 현황 분석결과

#### 3.1.1. WIPO의 기존 논의

WIPO 회원국들의 관심은 두 가지로 압축되었다. 첫째, 기존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장치가 전통지식 보호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이다. 즉 이것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장치(*sui generis*

mechanisms) 안에서 기존의 표준적인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 어떤 종류의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인증이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설정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즉 이것은 독자적인 장치(*sui generis mechanisms*)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법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이다.

WIPO는 2001년부터 전통지식 보호를 위하여 정부간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에 걸친 협의를 하였다. WIPO 사무국이 제안한 작업 가능한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멕시코, 스웨덴, 콜롬비아, 파나마 등 대부분의 국가는 2001년 4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였다. 첫째, 전통지식 용어 및 개념정립에 관한 이슈, 둘째,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가능성 및 범위에 관한 정보 수집, 비교, 평가 작업을 추진, 셋째, 전통지식을 효과적으로 검색 가능한 선행기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존 기준의 개정과 새로운 기준의 개발을 검토, 넷째, 보유자의 권리 집행을 지원할 방법, 특히, 보유자의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2차 협의회(2001년, 12월)에는 전통지식을 선행기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WIPO가 제안한 아래의 여섯 가지 과제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단지 베네수엘라, 페루 등 중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별

한 장치(*sui generis system*)의 논의를 촉구하였다

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전통지식관련 간행물들을 수집하여 그 중 일부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조사의 최소문헌으로 포함시키는 과제, 둘째, 수집된 전통지식 간행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일부를 JOPAL(Journal of Patent Associated Literature)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과제, 셋째, 자국내 내국출원에 대해서도 국제적 방식의 검색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이를 관련 심사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과제, 넷째, 국제적인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자도서관의 설립에 관한 과제, 다섯째,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서류양식을 전통지식관련 발명에도 적용가능한지 검토하는 과제, 여섯째, 서류화작업 과정 중 전통지식 서류화작업 담당 주체(토속주민, 지역사회, 국가/지역 기관 등)에게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과제 등이었다.

3차 협의회(2002년, 6월)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은 기존의 권리화 장치가 어떻게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들을 제공하였다.

이후 4차 협의회(2002년 12월), 5차 협의회(2003년 7월), 6차 협의회(2004년 3월)에서 이루어져 전통지식 권리보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3.1.2. 전통지식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리 보호 관련 국제협정

포세이와 듀필드(Posey and Dutfield, 1996)이 제시하고 있는 전통지식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이 18가지이다. 전통지식 관련 국제협약은 다음의 18가지 협약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있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협약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들 협약 중 국제경제·사회·문화권리협약(ICESCR), 국제시민정치권리협약(ICCPR), 국제노동기구169 협약(ILO 169), 국제법(NLs), UN 생물다양성 협약(CB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생

물다양성 보호협약(UPOV), 로마협약(RC), 유네스코 전통문화권리 소유권(Unesco-CCP), 유네스코 문화·자연유적 보호협약(Unesco-WHC)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 3.1.3. 국가별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법 현황

국가별 전통지식 보호 관련법 현황을 살펴보면, WIPO 국가간 위원회에 참여한 국가는 61개국이며, 그 중 25개국이 입장 표명을 하였다.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EU와 별도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은 저작권, 특허권, 상품권,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고 있다. 국가별 권리보호 관련법과 국가수에 대한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1 전통자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

범주	협정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
인권	ICESCR, ICCPR	UDHR, DDRIP, VDPA
자기결정권	ICESCR, ICCPR	DDRIP, VDPA
단체의 집합 권리	ILO 169, ICESCR, ICCPR	DDRIP, VDPA
영역권	ILO 169	DDRIP
종교의 자유 권리	ICCPR, NLs	UDHR
개발권	ICESCR, ICCPR, ILO 169	DDRIP, DHRD, VDPA
사생활권	ICCPR, NLs	UDHR
이전 통지 동의	CBD, NLs	DDRIP
환경보전	CBD	RD
지적재산권	WIPO, GATT, UPOV, NLs, CBD	
이웃권	RC	
계약·서약과 같은 법적인 협정권	NLs	
문화재산권	Unesco-CCP, Unesco-WHC, NLs	
민속보호권		Unesco-WIPO, Unesco-F
문화유적보호권	Unesco-WHC	
문화적 경관 인식	Unesco-WHC	
관습권	Unesco-WHC	DDRIP
농부권		FAO-IUPGR

표 2 국가별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법과 권리보호 현황

구 분	국 가 수	%
저작권	9	16.1
특허권	11	19.6
품종보호권	2	3.6
상표권	12	21.4
지리적 표시	13	23.2
의장권	7	11.5
상품 비밀법	2	3.6
총계	56(25개국)	100.0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리적 표시를 통하여 전통지식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는 상표권을 중시하고 한국은 특허권과 지리적 표시로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농산품이 지리적 표시와 품질인증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 3.1.4. 전통지식의 권리화를 위한 법적 적용에 있어서 한계점

선진국을 비롯한 국가와 카자흐스탄과 라트비아 등과 같은 국가들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을 적용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부록 2 참조). WIPO 회원국들은 새로운 법적인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WIPO 회원국들은 권리화 정책, 즉 전통지식의 권리화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적용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유형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개념으로 전통지식 보호를 하는데는 한계점이 많다. 구체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탄, 코스타리카,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는 전통지식이 국제적인 표준을 적용할 때 신규성(novelty)과 독창성(originality)의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은 점이 많다. 둘째, 호주, 부탄, 갬비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파나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등의 국가에서는 전통지식에 대하여 누가 개인적인 생산자인지에 대

표 3 국가별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법의 적용에서 인식된 한계점

문제점	국가	국가수	%
신규성/독창성	아르헨티나, 부탄, 캐나다, 쿠바, 체첸,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케냐, 한국, 말라위, 멕시코, 몰도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미국, 우루과이, 베트남	30	49.2
발명단계/비명확성	아르헨티나, 쿠바, 체첸, 독일, 과테말라, 이탈리아, 케냐, 말라위, 멕시코, 몰도바, 노르웨이,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미국, 우루과이, 베트남	19	31.1
고형화	케냐, 말라위, 멕시코,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토고, 우루과이	8	13.1
무형식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코스타리카, 쿠바, 프랑스, 케냐, 말라위, 멕시코, 몰도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사모아, 스페인, 스위스, 우루과이, 베트남	20	32.8
개인/집합	아르헨티나, 호주, 부탄, 쿠바, 체첸, 갬비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라위, 멕시코, 몰도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우루과이, 베트남	22	36.1
보호연한	쿠바, 체첸, 갬비아, 독일, 케냐, 멕시코, 몰도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14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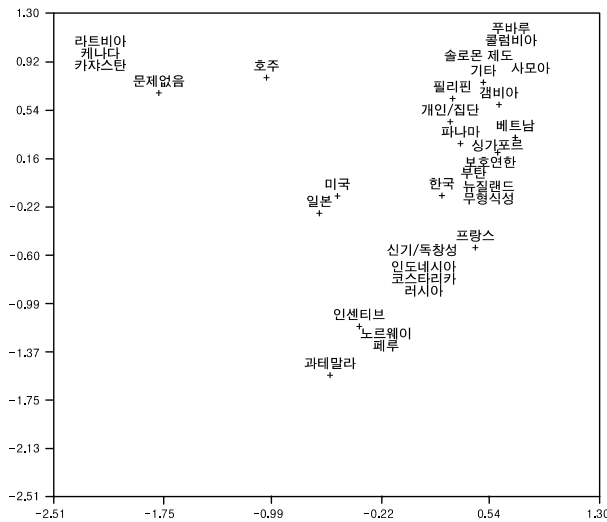
해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 부탄, 캄비아, 뉴질랜드, 러시아,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재산권의 보호를 얼마동안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 뉴질랜드, 베트남은 전통지식이 가지고 있는 무형식적인 성질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 의하면 전통지식이 가지고 있는 무형식적인 성질 때문에 기존의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장치를 적용하여 보호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지식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만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간처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효를 발휘하는 화학식과 분자구조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호주,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미국은 앞의 두 가지 측면, 지적재산권 적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였다. 즉 전통지식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개념으로 포용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지식 권리보호에 있어서 각국의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은 <표 3>과 같다. WIPO 회원국들은 신기성/독창성(49.2%), 발명단계의 비명확성(31.1%), 무형식성(32.8%), 개인/집합적인 권리 소유문제(36.1%)를 전통지식의 권리화를 위한 장애요소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신기성/독창성 문제와 개인/집합적인 권리 소유 문제를 전통지식을 권리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법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각국이 부딪히고 있는 애로 사항은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신기/독창성 문제와 개인적인 소유인지 집단적인 소유인지를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전통지식의 보호연한을 설정하는 문제와 무형식성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림 1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법의 적용에서 인식된 한계점의 상응분석 결과



### 3.1.5. 국가별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법과 권리보호 사례

WIPO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제도 하에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장치 하에서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스위스, 미국 등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헝가리, 한국, 스위스, 터키 등의 국가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장치 하에서 목록화를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록화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합법성이 서로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외의 다른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한 장치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는 저작권(copyright), 인증마크(certification marks), 의장권(designs)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 포르투갈, 루마니아는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와 공동상표권(collective trademark)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법(patent law)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적영역 속에 있지 않은 전통지식을 위한 비밀거래보호법(trade secret law)과 상표법(trademark law)에 주목하고 있다.

#### 가. EU의 전통지식 권리보호

현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 하에서는 모든 형태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EU와 같은 국가들은 전통지식 보유자들이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잘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지식 보호 정책은 지리적 표시제, 식물종 권리, 저작권이 있다.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or)는 전통식품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지역사회의 토산품들은 전통지식에 근거한 것이고 지리적 표시의 보호기준에 맞다면 지리적 표시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된 이름은 불법사용이나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식물종 권리(plant variety right)는 모든 식물의 ‘속’과 ‘종’을 인정한다. 따라서 ‘속’과 ‘종’의 수준에서 다른 식물과 구별되고 새롭고 안정적이라면 전통지식에 기인한 식물종 권리는 인정된다. 아이디어, 지식, 개념 등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copyright)이나 그 비슷한 권리 하에서 전통지식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지식이 표현되어 나타난 것은 상황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 나. 캐나다

캐나다는 저작권법(Copyright Act)에 의하여 향토예술가와 전통적인 것을 주제로 하는 작곡가나 소설가를 위하여 저작권보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주민들은 인증마크를 포함한 상표권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다. 원주민 비즈니스 조직들은 전통적인 상징이나 이름과 관련된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Act)에 의하여 산업디자인 보호는 원주민이나 지역사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콜롬비아와 뉴질랜드

콜롬비아나 뉴질랜드는 기존에 있는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가지고 전통적인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부적절한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이다. 콜롬비아는 486개 인디오 마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TAIRONA”라는 이름을 제정하여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거주한 지역이라는 표시를 하여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새로 상표법(Trade Marks Bill)이 원주민 지역사회의 중요한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특허를 허용하는 것을 통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해 왔다. 카자흐스탄은 외출복, 머리장식, 카펫, 안장장식, 주택과 그 구조물, 여성들의 악세사리

등은 산업디자인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장식품은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마. 베네수엘라과 베트남

베네수엘라와 베트남은 지리적표시제를 통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코쿠이 드 페카야(Cocuy the Pecaya)라는 술을, 베트남은 유르타(yurta)라는 약념과 산튜이막차우(Shan Tuyet Moc Chau)라는 차 등을 지리적 표시제를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약용을 위한 식물에 특허권을 설정하였고, 약용으로 사용하는 향신료에 대하여는 상표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3.2. 독자적 시스템 분석 결과

3.2.1. WIPO 회원국가의 전통지식 권리보호와 독자적 시스템 구축현황

WIPO 회원국가의 전통지식 권리보호와 독자적 시스템 구축현황은 <그림 2>를 통

그림 2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시스템 구축의 연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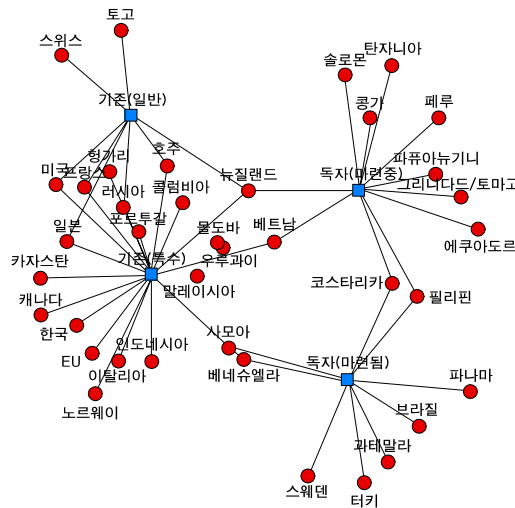




표 4 국가별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독자적 시스템 관련법 구축 현황

구분	국가명	국가수	%
독자적 시스템 관련법을 구축해 오고 있는 국가	브라질, 파나마, 페루, 포르투갈, 러시아	5	8.2
앞으로 구축할 계획이 있는 국가	케냐, 토고,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통가, 토바고, 루마니아	8	13.1
구축할 계획이 없는 국가	아르헨티나, 캐나다, 쿠바, 체첸, 독일,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몰도바, 스위스, 미국, 우루과이, 베트남	13	21.3

해 알 수 있다. 선진국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틀 내에서 두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후진국은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통 지식 보호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독자적 시스템 관련법을 구축해 오고 있는 국가는 전체 61개국 중 5개 국가로 8.2%이다. 앞으로 구축할 계획이 있는 국가는 61개국 중 8개 국가로 13.1%에 속한다.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없는 국가는 13개 국가로 21.3%이다.

### 3.2.2. 10개 국가의 독자적 시스템 관련법의 내용분석

현재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아프리카 연합,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인도,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태국, 미국으로 10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독자적 시스템 관련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자적 시스템 관련법의 내용은 정책과 법적인 측면, 정책도구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정책목적인 측면, 보호형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3>과 같다.

첫째, 정책과 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소는 지재권 설정여부, 이익공유, 토착주민에게 권리부여, 불공정 경쟁 억제이다. 이익공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둘째, 정책도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소는 접근규제, 배타적 권리, 불공정 거래 억제이다. 접근규제나 배타적 권리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셋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소는 권리보호, 유전자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경관보전, 소유자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넷째, 정책목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소는 전통지식 보호, 혁신증진, 공평한 이익공유,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다섯째, 보호형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소는 적극적, 방어적, 접근규제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은 2000년에 생물자원접근 규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이나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모델법을 제정하였다. 브라질은

2001년에 전통지식접근과 유전자원 접근규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에 “중국 전통의 학종 보호규제에 관한 특허법”을 제정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에 “인디언 예술과 장인기술 법(Indian Arts and Crafts Act)”을 제정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 3.2.3. 국가별 전통지식보호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 국가간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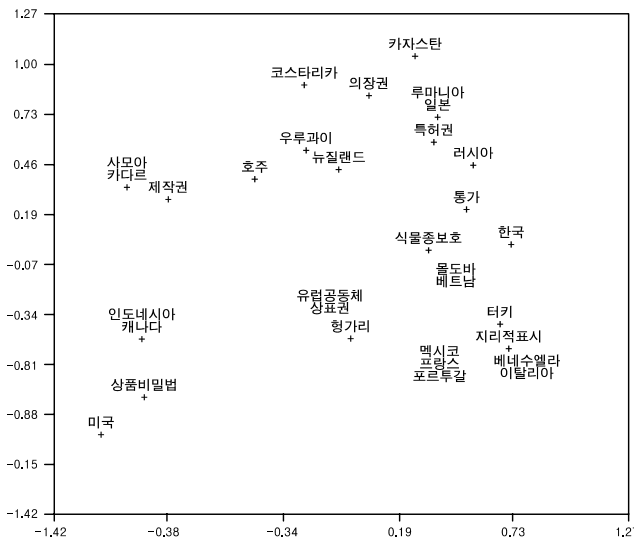
전통지식보호 관련법 적용에 있어 관련법간의 유사성과 관련법과 국가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응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EU 국가들은 지리적 표시와 특허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러시아, 루마니아는 특허권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 표시와 특허권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 3.2.4. 독자적인 시스템(sui generis system) 하에서 전통지식 보호 사례

WIPO의 참가국들은 독자적인 시스템 하에서 전통지식을 호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채택된 법을 위원회에 통보해 주도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기존에 존재하는 전통지식 보호 장치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장치에는 각국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브라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필리핀, 사모아, 스웨덴, 베네수엘라는 독자적인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자국 내에 제공하며 홍보해 왔다. 에콰도르,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솔로몬 제도, 탄자니아, 통가, 트리니다드, 베트남은 앞으로 채택될 독자적인 시스템에 관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주목하지는 않지만, 프랑스는 지적재산권을 형식화하여 공식화하는 문제와 순수

그림 3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법의 상응분석 결과



지식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앞으로 전통지식의 보호는 전통지식이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확립을 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요구한다.

#### 가. 브라질

브라질에서의 독자적인 시스템은 2001년 8월에 임시조치(Provisional Measure 2.186-16)라는 법령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법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쌍방향적인 접근을 통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계약을 통하여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의 사용으로 발생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령 9항은 전통지식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 이 법령은 지역사회가 다른 제 3자의 전통지식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통지식은 보호나 권리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유전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생산물이나 가공에서 산업재산권을 허용하는 것은 “프로비전얼 메저”(임시조치)라는 법령에 달려 있다. 즉 산업재산권 등록 지원자가 유전자원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브라질은 벌금, 불법물 압수, 유포금지, 권리무효, 정부지원 상실 등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 나.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에서는 생물다양성법(The Law on Biodiversity)을 통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장치는 다루지 않

고, 전통지식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범위를 참여연구과정을 통하여 확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물다양성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등록하여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설립하였다.

#### 다.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문화유적보호법(Cultural Heritage Protection National Law)에 의하여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 의약품 지식, 음악, 연극 등은 국가가 보호하고 있으며, 함부로 팔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도 없다. 문화재청은 공공재로서 전통지식을 다루고 있으며, 전체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전통지식이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라. 필리핀

필리핀은 1997년에 “원주민 권리법(Indigenous Peoples' Rights Act)”을 제정하여 원주민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와 원주민의 조상이 살고 있는 지역 안으로 연구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구자들이 원주민으로부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판물을 생산할 때에는 로알티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 3.2.5. WIPO에서 논의된 전통지식 지식

#### 재산권 관련 문제와 정부지원 사례

회원국가들은 전통지식 보유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관리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은 기존의 권리화 장치가 어떻게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들을 제공하였다.

#### 가. 베트남

베트남에서 발생한 사례로서 한 향토미술가가 베트남의 창조신화에 기반하여 만든 작품을 허가 없이 베트남에서 제작한 카펫을 호주로 수입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 미술가는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 거래를 제소하였다. 그래서 생산된 모든 카펫에 대하여 사용료(royalties)를 지불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때 판사는 이 제소에 대하여 “문화적 손해(cultural harm)”과 “총체적인 손해(agggregated damages)” 개념을 적용하여 제소를 인정하였다.

#### 나. 호주

호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향토미술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이 미술가가 그린 그림을 의복의 그림을 이용하여 호주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였다. 이 사례에서 주요 이슈는 이 미술가가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저작권에서 미술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법정은 미술가가 그 지역사회에 수탁자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법정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을 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저작권과 관련된 이러한 사례를 국민들이 분명히 인지하도록 홍보하였다.

회원국 국가들은 전통지식 소유자가 그들의 권리를 실행하고, 관리하고, 강화하도록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호주, 필리핀, 탄자니아에서 전통지식과 관련된 법은 전통지식소유자가 전통지식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브라질, 페루, 필리핀, 베트남은 전통지식 생산자와 보유자에게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개인 발명가에게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셋째, 뉴질랜드는 전통지식 생산자에게 특별한 관리와 권리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마오리산(Maori Made Mark)”이라는 인증마크(certification mark)의 개발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국가들에서 전통지식 보유자들은 소규모 가내공업을 위한 특별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는 다른 것과 구별되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회원국들(페루, 파나마, 사모아, 러시아)은 전통지식 소유자가 의사를 결정하거나 이익을 귀속시킬 때 관습법(불문법)에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 국가들은 전통지식 소유자가 재산권을 취급하는 것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노르웨이만이 앞으로 국제적인 추이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소개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4. 결 론

WIPO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장치(*sui generis mechanism*)의 수립이 논의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WIPO에 참가하는 각 국가들 간에도 기존에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들과 독자적인 장치(*sui generis system*) 수립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은 기존 관련법을 적용하여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하려 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지식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를 개발하여 자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시스템 구축의 계획이 없고 기존의 특허권과 지리적 표시와 같은 지적재산권법을 적용한다는 의견을 WIPO 정부간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로 국가간 지적재산권에 관한 충돌이 증가하면서 전통지식 권리를 두고 국가간의 충돌이 점차 증가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국내 전통지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독자적 시스템에 의한 보호체계가 없어 “김치”와

“고려인삼”에 대한 전통지식 권리 보호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셋째, 현재 독자적 시스템이 마련된 국가는 브라질 스웨덴 등 5개국으로 참가국들 중 8.1% 이고, 독자적 시스템을 마련 중인 국가는 토바고,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으로 참가국 중 13.1%이다. 그리고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으로 전통지식 권리보호가 유용한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 13개국으로 21.3%이다.

넷째,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법적인 측면에서, 이익공유의 문제,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불공정 경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와 어떠한 정책도구(접근규제, 배타적 권리, 불공정 거래 억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형태(적극적, 방어적, 접근 규제)와 정책목적(전통지식 보호, 혁신증진, 공평한 이익공유, 지속가능한 개발)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WIPO 회원국들이 전통지식을 권리화시키려고 할 때 부딪히고 있는 한계점으로 참가회원국 중 49.2%가 신기성/독창성을 드러낼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비명확성(31.1%), 무형식성(32.8%), 개인/집합적인 권리 소유 문제(36.1%)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해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관련법은 지리적 표시제인데, 앞으로 전통지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 권리화(지리적 표시) 내용

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EU나 유럽의 각국들은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와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두 가지로 구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는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PGI)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EU의 원산지 명칭 보호(PDO)과 같은 엄격한 지리적 표시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전통지식 권리화로 마련된 관련법 체계나 제도들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한국전통식품에 등록된 상품(보성제다, 보성몽중산다원농조합)은 다시 “보성녹차”라는 지리적 표시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어 전통지식 권리화 관련법 체계나 제도가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곱째, WIPO 사무국은 전통지식의 서류화 작업 과정 중 전통지식 서류화작업 담당 주체(토속주민, 지역사회, 국가/지역기관 등)에게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전통지식을 개발하여 서류화하는 주체가 되었을 경우 WTO 대비 농촌지원을 위한 직불제 프로그램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신은정. 2002.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지식재산 21』 71: 7-17.  
 이재철. 2002.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상).” 『지식재산 21』 72: 113-130.  
 이재철. 2002.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하).” 『지식재산 21』 73: 21-145.  
 특허청. 2002.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1998-2001).』 서울: 특허청.  
 특허청. 2003. “지리적 표시 효율적 보호 방안.” 서울: 특허청, 심사1국, 심사기준과 회의자료.  
 Craven, E. and C. Mather. 2001.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he South Afric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 *Area* 33 (3): 312-20.  
 Daes, Irene-Erica. 2000.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heritage of indigenous peoples.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E/CN.4/Sub.2/2000./26).  
 Drahos, P. and R. Mayne. 2002.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nowledge, access and development*. New York, NY: Oxfam.  
 EUROPA. 2003. *Agriculture and Food*.  
<http://europa.eu.int/comm/agriculture/footqual>  
 EUROPA. 2003.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en/121097.htm>  
 Gervais, D. J. 1999. The TRIPS agreement.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3: 156-62.  
 Gervais, D. J. 1999. *The TRIPS agreement:*

- Drafting history and analysis.* London, UK: Sweet and Maxwell
- Grenier, Louise. 1998. *Working with indigenous knowledge: A guide for researchers.* Ottawa, 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 Janke, T. 1999. *Our culture, our future.* Report presented for the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and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ommission.
- Juma, C. 199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globalization: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Discussion, Paper 4.* Cambridge, MA: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 Maskus, K. E. 200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globa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McDonald, I. 1998. *Protecting indigenous intellectual property.* Sydney, Australia: Australian Copyright Council.
- Posey, D. A. and G, Dutfield. 1996.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Toward traditional resource rights for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Ottawa, ON, Canada: Canadian Cataloguing in Publication Data.
- WIPO. 2001. *Appellations of Origin in the Viticultural Sector the Vision of the Wine Products.*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va, Swiss: WIPO, WIPO/GEO/MVD/01/3.
- WIPO. 2001. *Appellations of Origin Position of Chile's Vineyards in the Concert of the New World, and in Relation to the Negotiations with the European Union.*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va, Swiss: WIPO, WIPO/GEO/MVD/01/7.
- WIPO. 2001.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Latin America.*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va, Swiss: WIPO, WIPO/GEO/MVD/01/5.
- WIPO. 2001.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nd Related Work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va, Swiss: WIPO, WIPO/GEO/MVD/01/2.
- WIPO. 2001. *Some Notes on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in Countries with Emerging Economies: The Andean Community.*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va, Swiss: WIPO, WIPO/GEO/MVD/01/06.
- WIPO. 2001.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Mexico.*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va, Swiss: WIPO, WIPO/GEO/MVD/01/4.
- WIPO. 2001.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Mexico.*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va, Swiss: WIPO, WIPO/GEO/MVD/01/7.
- WIPO. 2001. *The Way Ahead: Developing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Thinking Locally, Acting Globally*.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va, Swiss: WIPO, WIPO/GEO/MVD/01/9.
- WIPO. 2002.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Geneva, Swiss: WIPO, WIPO/GRTKF/IC/3/7.
- WIPO. 2002.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Geneva, Swiss: WIPO, WIPO/GRTKF/IC/3/9.
- WIPO. 2003. *Geographical Indications.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va, Swiss: WIPO.
- WIPO. 2003.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Composite Study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Geneva, Swiss: WIPO, WIPO/GRTKF/IC/5/8.

■ 원고접수일 : 2004년 7월 9일
원고심사일 : 2004년 7월 12일
심사완료일 : 2004년 8월 12일



부 록

부록 1 국가별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독자적 시스템 관련법 구축 현황

구분	기존의 지적재산권이 유용		독자적인 장치 마련	
	일반적인 분야	특수한 분야	장치가 마련됨	장치 마련 중
호주	○	○		
부탄				
보스니아				
보츠와나				
브라질			○	
캐나다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
에쿠아도르				○
이집트				
에티오피아				
프랑스	○	○		
괌피아				
과테말라			○	
헝가리		○		
인도네시아		○		
일본	○	○		
카자흐스탄		○		
한국		○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파키스탄				
파나마			○	
파푸아뉴기니				○
페루				○
필리핀			○	○
포르투갈		○		
카타르				
루마니아		○		
러시아	○	○		
사모아		○	○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
스웨덴			○	
스위스	○			
탄자니아				○
토고	○			
통가				○
그리니다드&토바고				○
터키		○		
투바루				
미국	○	○		
베네수엘라		○	○	
베트남		○		○
EU		○		

자료: WIPO/GRTKF/IC/3/7, ANNEX I.

부록 2 국가별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법 적용의 한계점

국가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전통지식보호의 문제에 관한 인지						
	문제없음	신규성 독창성	인센티브 단계	무형식적인 본질	개인대집단 생산물	보호	기타
호주	○				○		
부탄		○			○	○	
보스니아							
보츠와나							
브라질							
캐나다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에쿠아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프랑스		○		○			
갬비아					○	○	○
과테말라			○				
헝가리							
인도네시아		○					
일본	○	○	○		○		
카자흐스탄	○						
한국		○			○		
라트비아	○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파키스탄							
파나마		○			○		○
파푸아뉴기니							
페루		○	○				
필리핀					○		
포르투갈							
카타르							
로마니아							
러시아		○	○			○	
싱가포르		○			○	○	○
솔로몬 제도					○		○
스웨덴							
스위스							
탄자니아							
토고							
통가							
토바고							
터키							
푸마루							○
미국	○	○	○				○
베네슈엘라							
베트남				○		○	○
EU							
사모아					○		○

자료: WIPO/GRTKF/IC/3/7, ANNEX II.

부록 3 독자적 시스템 구축시 국가별 중요 정책적 선택에 있어서 고려요소

구분	아프리카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인도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태국	미국
법과정책	지재권		○			○			○	○
	이익공유	○	○		○	○		○		
	토착주민권리					○	○			
	불공정경쟁억제					○				○
정책도구	접근규제	○	○		○	○	○	○		
	배타적 권리	○	○	○	○	○		○	○	○
	불공정경쟁억제				○	○		○		○
	관습법	○				○	○			
법의목적	전통지식보호	○	○ (+유전자원)		○ (+생물다양성)	○ (+생물자원)	○	○ (+풍경)		○ (+문화유적)
	혁신증진			○			○	○		○
	공평한이익공유	○ (+생물자원)	○ (+유전자원)		○ (+생물다양성)	○ (+생물자원)	○	○ (+생물자원) (+풍경)		
	지속가능한개발	○					○	○		○
보호형태	적극적	○	○	○	○	○	○	○	○	○
	방어적	○	○		○	○	○			○
	접근규제	○	○		○	○	○	○		
결합되는 것의 규제	○	○	○	○	○		○	○		
예외와 제한	관습법	관습법		관습법	관습법	관습법		관습법	관습법	
내용	내용	생물자원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생물자원	풍경		
	하부영역	전통농업		정통의약				전통농업	전통의약	
	소유자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체			지역주민	주민공동체	ICCs/IPs		인디안부족